



일본 고령자 기준연령 개정 주요 논의 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일본 노년학회는 현재 고령자에 대해 신체·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평균수명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 기준을 75세로 조정하도록 2017년 1월에 권고함. 현재 일본 정부는 자문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7년 중에 고령자 연령 기준을 확정할 예정임. 고령화에 대한 조기 대처하지 못했던 일본을 반면교사하여 우리나라도 고령자 연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자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의 재검토를 2016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⁷⁾

-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감소 때문에 아베 정부가 목표로 한 장기 경제성장률 3%(명목) 수준을 30년 이내에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임
-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 연령을 현재보다 5세 더 연장하여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경제활동⁸⁾에 종사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일본의 현재 고령자 연령은 1959년 유엔 보고서에서⁹⁾ 유래된 이후 사회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는 않음

-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은 65세~74세를 전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고령자로 규정하고, 『고령자차우방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명시하며, 일본 인구통계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7)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 정의 재검토 제안서를 경제자문회의(정부자문기구)에 제출하였음

8) 생산가능인구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6년 60%에서 2050년경에는 5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일본 내각부, 2017)

9) UN(1959), The Aging of Population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 다만, 타 법에서 고령자 연령 기준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55세 이상을 고연령자)』, 『고령자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60세 이상 고령자)』, 『도로교통법(70세 이상인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일본노년학회 등은 2017년 1월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내각부보다 진보적인 방안을 제시함(〈표 1〉 참조)

- 일본노년학회 등은 2013년부터 의학 · 심리학 · 사회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고령자의 신체 · 지적기능 ·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1950년대에 확립된 고령자 연령 기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의학적 ·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과거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신체적 ·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젊어지고 있으며, 최근 고령자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

〈표 1〉 일본노년학회 고령자 정의 개편 제안 내용

연령	명칭	시기
65~74세	준 고령자	준 고령기(Pre-old)
75~89세	고령자	고령기(old)
90세 이상	초 고령자	초 고령기(oldest-old, super-old)

자료: 日本老年学会 · 日本老年医学会(2017. 1. 5)

■ 일본 내각부가 6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¹⁰⁾에 의하면 고령자 연령 기준을 70세~85세 이상¹¹⁾으로 하자는 응답률이 전체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후생노동성(2016)¹²⁾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건강수명¹³⁾은 남성 71.2세(평균수명 80.2세), 여성 74.2세(86.6세)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65세~74세의 약 82%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함

10) 内閣府(2014), 高齢者の日常生活に関する意識調査結果

11) 고령자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6%, 70세 이상 29%, 75세 이상 28%, 80세 이상 19%, 85세 이상 3%로 전체에서 70세~85세 이상 구간의 응답률이 79%를 차지

12) 厚生労働省(2016. 10), 高齢社会白書

13) 2013년 일본 간이생명표, 인구통계통계 기준

- 일본 내각부는 향후 고령자 연령 기준이 상향조정 될 경우 일본의 사회시스템 및 제도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 연령 기준이 상향조정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정년 연장을 통해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제도의 개정된 고령자 연령 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kiri**